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18. 2.

[사] 오픈넷



대표자: 남희섭

주소: [우]066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62-9, 402 (서초동, 한림빌딩)

전화번호: 02-581-1643 팩스: 02-581-1642

1.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로 인한 권리침해 방지 시책을 마련하여 권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44조 및 안 제73조 제3호의2 신설).

2. 반대의견

가. 제44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에 대해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함. 다만 이미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17.9.26)」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시책을 마련·실시하고 있음
 - 방통위는 2017년 12월 제4기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불법·유해정보 유통차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 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 기술을 개발하며, 경찰청과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힘
 - 방심위는 지난 2월 14일 불법촬영물(개인성행위정보 등)에 대한 심의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긴급심의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성범죄 전담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따라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며 오히려 범정부적

차원의 업무공조 및 대응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보임.

나. 제73조 제3호의2 신설

- 개정안은 사업자가 제44조의2 제2항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반대함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소위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 침해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기업, 사업주의 소비자 불만글 차단 및 정치인, 연예인, 종교 지도자 등 공적 인물의 비판적 여론 차단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가 삭제나 임시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면 사업자는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정보 등 공익성이 강한 정보나 권리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 및 합법정보도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차단해야 하므로 정보계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
 - ※ 현재 네이버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임시조치 등과 관련해 한국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규정에 따른 자율규제를 하고 있고, 임시조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심사중임
- 또한 불법정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들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유통한 당사자가 아닌 사업자를 유통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함
- 문재인 정부는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이에 따라 방통위에서는 포털 등의 일방적인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계재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반론기회를 제공하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보장하는 균형잡힌 개선안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에 대해 시민사회도

박근혜 정부때부터 개선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음.
그런데 개정안은 이러한 임시조치 개선 노력을 형해화 시키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의하고 있는 임시조치 개선 방향에도 완전히 상충됨

※ 제20대 국회에서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부안과 유승희 의원안이 제출·발의되어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함

3. 결론

-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제44조 개정은 입법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며, 제73조 개정은 사업자에게 무조건 임시조치를
하게 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법정보를 유통시킨 당사자가
아님에도 사업자를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며,
이미 수년간 논의중인 임시조치 제도 개선 방향과도 상충되므로 이상과
같이 반대함